

■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 추계신고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준<br>경비율 | 사업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•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주요경비 + 기준경비)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▶ 주요경비(입증) = 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▶ 기준경비 = 수입금액 × 기준경비율(복식부기의무자 '기준경비율 × 50%' 적용) |

■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의 순서로 공제한다.  
근로소득금액 → 연금소득금액 → 기타소득금액 → 이자소득금액 → 배당소득금액
-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.

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특별소득공제               | 근로소득이 있는 자 |
| 주택마련저축공제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|            |

■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

| 구 분   | 영세율제도             | 면세제도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징    | 소비자국 과세원칙, 수출장려   | 저소득층의 역진성 완화           |
| 납세의무자 |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 |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|
| 매입세액  | 공제가능              | 공제불가                   |
| 면세정도  | 완전면세              | 불완전면세                  |

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

- 법인(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)의 국세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
- 납세의무자 :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
-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: 징수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

■ 자금출처조사 소명금액

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증여세가 과세된다.  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입증금액 ≤ Min[취득 재산가액 × 20%, 2억 원]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■ 양도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

| 양도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<br>②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<br>③ 공동사업에 현물출자<br>④ 협의매수, 수용, 공매, 경매 등 | 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<br>② 보류지로의 총당<br>③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<br>④ 양도담보 제공<br>⑤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환원<br>⑥ 연결한 토지의 공유물 분할<br>⑦ 신탁해지<br>⑧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|

■ 연금계좌세액공제

| 종합소득금액(총급여액)          | 연금저축 한도(퇴직연금포함 통합 한도) | 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4,500만 원 이하(5,500만 원) | 600만 원(900만 원)        | 15% |
| 4,500만 원 초과(5,500만 원) |                       | 12% |
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만기로 계좌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전환금액의 10%(300만 원 한도)의 금액 :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적용

■ 연금수령 시 과세 : 연금소득세

| 소득원천                       | 세금의 종류 | 세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연퇴직소득                     | 연금 소득세 | 퇴직소득세율 × 70%(60%)<br>(연금실수령연차 11부터는 60%) | 합산하지 않음<br>(무조건 분리과세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그 외 소득(운용 수익 및 공제받은 자기부담금) |        | 원천징수세율 3 ~ 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간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,200만 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(15%) |

이패스코리아 회원님께 드리는 선물

▶ 신규가입 선물

이패스코리아 신규 가입시 수강료 5% 할인쿠폰 지급

금융 & 은행자격증 환승 이벤트

▶ 금융, 은행자격증 타사 수강내역 또는 시험 응시내역(독학) 첨부 시 판매가의 20% 할인 혜택!

(단, FPSB와 FP협회의 수료과정은 10%만 할인 제공)

New 연금상담전문가 과정

▶ 국내 최초 연금상담 전문자격증!

▶ 연금 준비단계부터 은퇴 후 전반적인 연금생활까지, 공적·사적 연금 등 연금에 관한 종합적·전문적 상담을 수행합니다.

▶ 2024년 7월 27일 대비 연금상담전문가 온라인과정

- 구성 : 정규이론(한국FP협회 기본서 + 이패스 요약 & 문제풀이집 제공)
- 교육비 : 135,000원 (5명 이상 동시신청 시 10% 추가할인)
- 계속교육학점 40학점 인정

2024년 시험안내

▶ 2024년 4월 20일 대비 은퇴설계전문가 합격보장반

- 구성 : 정규이론 + 핵심요약&문제풀이
- 교재 : 기본서(3권), 이패스 요약&문제풀이집 제공
- 교육비 : 195,000원
- 혜택 : 불합격 시 수강1회 연장 / 계속교육학점 30학점 인정

▶ 2024년 5월 18일 대비 CFP 프리미엄 패키지

- 구성 : TVM + 이론 + 문제풀이 + 최종모의고사
- 교재 : 기본서(9권), 재무계산기, 문제집, 요약집, 모의고사
- 교육비 : 450,000원(대학생 할인 400,000원)

▶ [400%환급반] 2024년 8월 24일 대비 AFPK 패키지

- 구성 : 이론 + 문제풀이 + 핵심요약 + 최종모의고사
- 교재 : 기본서(8권), 모듈별 핵심요약집/문제집, 최종실전모의고사
- 교육비 : 329,000원
- 혜택 : 상우(10위) 합격 시 400% 환급, 일반 합격 시 200% 환급 / 불합격 시 수강1회 연장

계속교육학점 과정

▶ 윤리1학점 포함 일반 과정 최소 2학점부터 최대 101학점까지 다양한 분야의 단과, 종합, 패키지 구성 & 수료보고 대행서비스!

\*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

과정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은

홈페이지 <http://www.epasskorea.com>

상담전화 1600 - 0522

공복 시험에 나오는 핵/심/체/크

2024년 3월 16일(토) 시험대비

AFPK

이패스코리아가 여러분의 합격을  
기원합니다!

CFP 합격까지

이패스코리아와 함께하세요!

❖ AFPK 시험정보 ❖

▶ 시험 시간 : 3월 16일 (토) 14:00 ~ 18:00

▶ 합격자발표 : 4월 5일 (금) 10:00

진정한 전문가로 가는길

epasskorea

국제 · 국내 자격증 실무교육

TEL. 1600-0522

1과목 재무설계개론 및 직업윤리

- 2000년 4월 한국FP협회 창립, 13번째 회원국(6월 업무 제휴)
- 2004년 한국FPSB와 한국FP협회 분리, AFPK 자격인증요건 (교육, 시험, 윤리)
- AFP자격국가 (호주, 일본,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)
- 자격갱신 : 유효기간 2년, 20학점 (윤리학점 2학점)
- 재무설계사 : 재무전문가, 교육전문가, 상담전문가
- 부채관리 : ① 담보인정비율(LTV) ② 총부채상환비율(DTI) ③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
- 신용회복위원회 : [연체 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 89일 이하), 개인워크아웃 90일(3개월) 이상] 총채무액 15억, 보증인 동일 효력
- 법원 : 개인회생제도(총채무액 25억), 개인파산제도(농비, 도박 면책 허용 안 됨),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유사, 보증인 동일한 효력 없음
- 전문금융소비자 적용  
6대 판매규제 중 (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, 광고규제), 위법계약해지권
- 일반금융소비자 적용  
6대 판매규제(적합성, 적정성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, 부당권유, 광고금지), 청약철회권, 위법계약해지권
-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
  - 충실의무, 고지의무, 진단의무(투자자 적합성), 자문의무, 갱신유지의무 윤리원칙
  - \* 고객우선의 원칙, \* 성실성의 원칙, \* 객관성의 원칙, \* 공정성의 원칙,
  - \* 전문가 정신의 원칙, \* 능력개발의 원칙, \* 비밀유지의 원칙, \* 근면성의 원칙
  - 한국FPSB에 대한 통지의무 :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 1개월 또는 30일 이내 한국FPSB 통보
  - 결격사유 (13가지로 제시, 파산 5년, 금고 3년, 신념 1년, 음주·약물 1년, 등)
- AFPK® 자격상표
  - 항상 대문자로 사용해야 한다. ★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™ (큰 대문자와 작은 대문자 혼용 가능)
  -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항상 '®' 심볼을 위첨자로 사용하여야 한다.  
다만 인쇄물이나 문장 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위첨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'®' 심볼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.

2과목 은퇴설계

■ 국민연금 \*

-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년 이내, 50세 이상 5년 이내 / 추후납부 10년 미만(119개월)의 범위 내(최대 60회 분납가능)
- 실업크레딧(구직급여 수급자 대상, 본인부담 25%) 12개월 한도
- 출산크레딧 : 2자녀(12개월), 3자녀(30개월), 4자녀(48개월), 5자녀 이상(50개월) / 군복무크레딧 6개월

■ 노령연금 \*

(10년 이상, 조기노령연금(최대 5년 일찍, 1년 당 6%감액), 소득이 있는 업무(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,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), 노령연금연기제도(노령연금수급연령[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]부터 5년의 기간 이내, 신청횟수 제한 없음, 매1년당 7.2%)

■ 분할연금

- 이혼, 수급개시연령 도달,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, 해당 연금액의 1/2
- 반환일시금 \* 반납은 최대 24개월까지 허용
- 중복급여의 조정 \* : 노령연금 선택(노령연금 + 유족연금의 30%), 유족연금 선택(유족연금 지급)
- 공적연금 연계 \* : 10년(군인연금과 연계 20년), 임의계속가입기간(연계대상기간 미 포함, 연계급여 연금액 산정 시는 포함)

■ 퇴직 급여 직접 지급 가능

55세 이상,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,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

■ 담보제공 및 인출 : DB형은 중도인출 금지

-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,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, 6개월 이상 요양, 역사 5년 이내 파산선고·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,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, [대학등록금, 결혼비용, 장례비 부담]은 담보제공에 한함

- **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** :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
  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 원 이하 : 16.5%, 해당 금액 초과는 13.2%,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
  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(단,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)이고 ISA만기 이체 관련 한도 300만 원 포함하는 경우 1,200만 원임)
  - 중도인출 :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, 그 밖의 경우 기타소득세 16.5%

## 3과목 부동산 설계

### ■ 토지의 자연적 특성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부동성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부동산 활동 및 시장의 국지화</li> <li>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에서 현장답사활동이 필요</li> <li>부동산중개업이 제도화되는 근거가 됨</li></ul> </div> |
| 부증성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감가상각 적용이 배제</li> <li>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영속성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감가상각 적용이 배제</li> <li>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함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별성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개별성으로 인해 비대체성의 특성을 갖고 있음</li> <li>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‘일물일가의 법칙’ 적용을 배제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|

### ■ 부동산 수요의 증가요인과 공급의 증가요인

| 수요의 변화(증가요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급의 변화(증가요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인구 및 가구 수의 증가</li> <li>소득수준 증가(정상재의 경우)</li> <li>금리의 인하</li> <li>대체재의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</li> <li>부동산 조세의 세율 완화</li> <li>공·사법상 규제 완화</li> <li>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</li></ul> </div>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공급자의 수 증가</li> <li>건축기술의 발달</li> <li>원가절감과 공사기간의 축소 등</li></ul> </div> |

### ■ 부동산 물권의 개념

| 구분    | 물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적 성격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체로 강행규정임</li> <li>물건에 대한 지배권</li></ul> </div>    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체로 임의규정임</li> <li>특정인에 대한 요구권</li></ul> </div>         |
| 객체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현존·특정·독립의 물건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채무자의 급부행위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징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절대권(모든 사람에게 주장)</li> <li>배타성 존재(독점성)</li></ul> </div>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상대권(특정 상대방에게 주장)</li> <li>배타성이 없음(평등성)</li></ul> </div> |
| 효력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채권에 대한 우선성</li> <li>물권 간 시간적으로 우선권</li></ul> </div>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채권 간 평등주의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■ 지목

- 1필 1목의 원칙 단, 과수원, 목장용지, 묘지의 일부가 주택 또는 시설관리사무소 등으로 쓰이는 면적은 대로 한다.
- 하천과 구거 : 하천(자연적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), 구거(인공적인 수로부지 또는 자연적 유수의 부지로 소규모 수로부지)
- 도로 : 휴게소부지도 도로에 해당함
- 부호의 사용 : 초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/차/천/원 은 제외 ☞ 공장용지, 주차장, 하천, 유원지

### ■ 경매와 공매

| 구분         | 경매             | 공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명도책임       | 매수인           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</li> <li>수탁재산은 매도인</li> <li>압류재산과 국유재산은 매수인</li></ul> </div> |
|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| 인도명령 후 명도소송 진행 | 인도명령제도 없으며 명도소송만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증금액       | 최저매각가격의 10%    | 입찰가격의 10% (1천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매각방법       | 기일입찰 방식        | 기간입찰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■ 해제와 해지

| 구분     | 해제             | 해지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효력     | 소급효            | 장래효           |
| 의무     | 원상복구의무         | 청산의무          |
| 손해배상책임 | 인정             | 인정            |
| 적용     | 1회성 거래(매매계약 등) | 계속적 거래(임대차 등) |

### 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

| 구분     | 재개발     | 재건축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정비기반시설 | 열악      | 양호          |
| 건축물    | 노후·불량   | 노후·불량       |
| 안전진단   | 실시하지 않음 | 실시함         |
| 세입자 대책 | 있음      | 없음          |
| 개발부담금  | 없음      | 부과(초과이익환수법) |

### ■ 리츠

-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(일반 REITs) : 실체형 회사
-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 : 명목회사
-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(CR-REITs) : 명목회사

## 4과목 상속설계

- **상속결격**(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음), 고의,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조건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포함 안 됨. (낙태도 상속결격) (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됨) 사기, 또는 강박, 위조, 변조, 파기

- **대습상속의 인정요건** : 선사망, 상속결격, 동시사망의 추정 또한 상속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.

-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

- **상속의 승인과 포기**(고려기간 :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, **특별한정승인** : 종대한 과실 없어야함, 3월내에 한정승인 가능,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, 미성년자의 특별한정 승인)

- **비밀증서에 의한 유언** : 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인

- **구수증서에 의한 유언** :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

- **간주상속재산** :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, 신탁재산, 퇴직금 등 단,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제외

- **추정상속재산** : 1년 이내 2억, 2년 이내 5억

- **사전증여재산**(상속인 10년 이내, 상속인 외의 자(5년 이내)

-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만 적용·기초공제(2억 원) + 그 밖의 인적공제

- **배우자상속공제** :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

- 분납 : 1천만 원 초과, 연부연납 : 2천만 원 초과, 물납 : 2천만 원 초과, 증여는 물납 불가

- **비과세 증여재산** : 연간 4천만 원 이내의 보험금, 장애인 신탁재산(5억 원 한도)

- **증여재산가산액** : 금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번 증여와 합산 과세

- **상속·증여재산의 평가**(원칙 : 시가평가) 평가기간 : 상속(평가기준일 전·후 6개월), 증여(평가기준일 전6개월, 후3개월)

- **계약 관계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과세 여부** 납입한 계약자 등이 생존한 경우 증여세 과세,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, 본인이 납입한 경우 세금 없음

## 5과목 위험관리와 보험설계

- **물리적 위태**(빙판길 운전, 주유소에서 담배 등)

- **도덕적 위태**(부정직, 무책임, 수리비 과잉 청구, 보험사기, 자동차 사고 조작, 공장에 방화 등)

- **정신적 위태**(부주의, 무관심, 고의성은 없으나 손실 발생을 방관, 태도 위태, 주의력 감소로 문 열어둔 채 외출, 정신적 위태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태에 포함)

### ■ 보험제도의 기본원리

대수의 법칙, 수지상등의 원칙, 급부·반대급부의 원칙(개별 수지 균등의 원칙) ※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(이득금지원칙)

### ■ 보험계약의 특성

불요식·낙성계약, 유상·쌍무계약, 조건부계약, 사행(요행)계약, 부합계약 ※ 사망보험은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, 심신상실, 심신박약(예외 있음)일 경우 무효 처리된다.

### ■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(3가지)

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을 때,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 설명, 청약서에 자필·서명하지 않은 때

### ■ 보험설계사

제1회 보험료 수령권 / 보험대리점(계약체결 대리권, 고지의무수령권, 보험료 수령권)

### ■ 장애인전용보험

세액공제 연간 100만 원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, 연간 보험금 4,000만 원 한도 내 증여세 비과세

- **감액완납** : 보험료 미납, 보험금 감액, 보장기간 동일, 해지환급금 미지급

- **연장정기** : 보험료 미납, 보험금 동일(특약은 해지), 보장기간 단축, 해지환급금 미지급

- **위법계약해지** :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,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위법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.

- **상해보험** : 급격(예측불가능이나 불가피성)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세 가지 조건 충족 및 인과관계 존재해야 한다.

- **손해보험** :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적이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여부와 사고 발생 시간 및 규모가 모두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.

- **주택화재보험**(화재, 바람, 폭발, 파열 등 보상) 80% Co-Insurance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 일반화재보험에서 일반물건(재고자산 제외)은 주택화재보험 동일하게 계산

- **배상책임보험** : 보형가액, 중복보험, 초과보험의 개념이 없다. 피보험자의 과실, 즉 부주의를 담보한다.

- **자동차원제도(장기화재보험)** :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% 미만(또는 이하)일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음

- **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** : 배상책임의 주체(운행자), 책임형태(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), 입증책임(가해자, 운행자), 손해배상 보장제도(의무보험, 직접청구권,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)

- **반의사불벌 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** 사망사고, 사고 후 도주(뺑소니),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.

- **자동차보험 의무보험** : (대인배상 은 1인당 보상한도 유한,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음, 대물 보상은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로 보상),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

- **종합보험(임의보험)**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다.

- **운전자보험** :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(의료비, 벌금, 방어비용, 형사합의지원금, 면허취소위로금 등)을 보상하는 상품이다.

## 6과목 투자설계

### ■ 고용률과 실업률

- 실업률 = 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 × 100
- 취업률 = 취업자 ÷ 경제활동인구 × 100 = 100 - 실업률
- 고용률 = 취업자 ÷ 만 15세 이상 인구 × 100

### ■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의 관계

| 상황            | 평가   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기대수익률 > 요구수익률 | 저평가상태 | 내재가치 > 시장가격 |
| 기대수익률 = 요구수익률 | 적정상태  | 내재가치 = 시장가격 |
| 기대수익률 < 요구수익률 | 고평가상태 | 내재가치 < 시장가격 |

### ■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의 관계

| 자본시장선 (CML)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총위험(<math>\sigma</math>)과 기대수익률의 관계</li> <li>효율적 포트폴리오로만 구성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증권시장선 (SML)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체계적 위험(<math>\beta</math>)과 기대수익률의 관계</li> <li>개별 자산,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할지라도 증권시장선상에는 존재</li></ul> </div> |

### ■ 주식스타일

- 1) 가치스타일 : 워렌버핏

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방법 / 저PER 투자, 고배당수익률 투자 등
- 2) 성장스타일 : 필립피셔

기업 미래의 수익성(성장성)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운용전략 / 매출증가율이 시장보다 높으며, 고PER, 고PBR을 보이는 주식 등에 투자

### ■ 펀드의 기준가격

- 국내투자 펀드는 당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 산정,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전일 종가를 사용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함
-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이틀 전 종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어제의 추가변동에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

### ■ 패시브 ETF 및 액티브 ETF

- 1) 패시브(passive) ETF :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
  - 과리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
- 2) 액티브(active) ETF :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
  - 과리율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
  - 상관계수 제한 존재(비교지수 수익률과의 상관계수를 0.7 이상으로 유지)

### ■ 주기연계 상품의 상호 비교

| 구분    | 주기연계증권 (ELS) | 주기연계펀드 (ELF) | 주기연계신탁 (ELT) | 주기연계예금 (ELD)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발행기관  | 투자매매업자       | 집합투자업자       | 신탁업자         | 은행           |
| 근거법률  | 자본시장법        | 자본시장법        | 자본시장법        | 은행법          |
| 법적형태  | 파생결합증권       | 집합투자증권       | 특정금전신탁       | 예금           |
| 예금자보호 | 없음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| 있음           |
| 손익구조  | 사전약정 수익률     | 실적배당         | 실적배당         | 사전약정 수익률     |

### ■ 채권투자전략

| 액티브전략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듀레이션전략</li> <li>크레딧전략</li></ul> </div>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패시브전략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인덱싱전략</li> <li>만기보유전략</li> <li>현금흐름일치전략</li></ul> </div> |

### ■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

| 전략적자산 배분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중장기적으로 자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</li> <li>투자자의 투자목표(goal), 투자기간 및 투자자성향을 반영하여 수립</li></ul> </div>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술적자산 배분 | <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달성</li> <li>자산별 비중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액티브 투자전략의 일종</li></ul> </div>          |

### ■ 투자전략의 조정

- 1) 리밸런싱(rebalancing)
  - 저점매수·고점매도(buy low, sell high)전략
  - 전술적 자산배분은 액티브 전략인데 비해 리밸런싱은 원래의 전략 수준으로 재조정 하므로 수동적 관점에서 비중을 재조정하는 것임
- 2) 마켓타이밍(market-timing)
  -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산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자산배분
  - 비교지수를 두지 않고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에 주로 사용

## 7과목 세금설계

### ■ 납세의무의 소멸사유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①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총당           |
| ③ 부과처분의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조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|
| 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(5년,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) |                |